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30일, 최형두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7.) 상정,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형두의원)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가.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안 제70조)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한 개별법상의 규정 중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	제7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2) 검토의견

현행법 제41조¹⁾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등의 양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70조제1항²⁾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도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³⁾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⁴⁾됨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31조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개별법상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⁵⁾ 행정법 체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2024. 1. 16. 시행

5)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개별법상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현행법, 「행정기본법」 및 개정안 비교 >

	현행법 제70조(이행강제금)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개정안
이행강제금 금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u>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현행법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규정에 관한 일반 사항	-	① 이행강제금 부과 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명 확하게 규정하여야 한 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행정기본법」 준용
이행강제금 가중·감경	-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 액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 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유	「행정기본법」 준용
계고 처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u>이 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u>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 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u>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 告)하여야 한다.</u>	「행정기본법」 준용
통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u>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 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u>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u>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 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 어 의무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u>	「행정기본법」 준용

반복 부과 및 의무 이행시 부과 중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u>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u>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u>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u>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u> 다만, 의무자가 <u>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u>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u>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의무 이행시 부과 중지는 「행정기본법」 준용
미납부시 절차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u>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u>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행정기본법」 준용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과정을 거쳤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7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 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 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 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 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를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 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 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u>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삭 제></u>
<u>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u><삭 제></u>